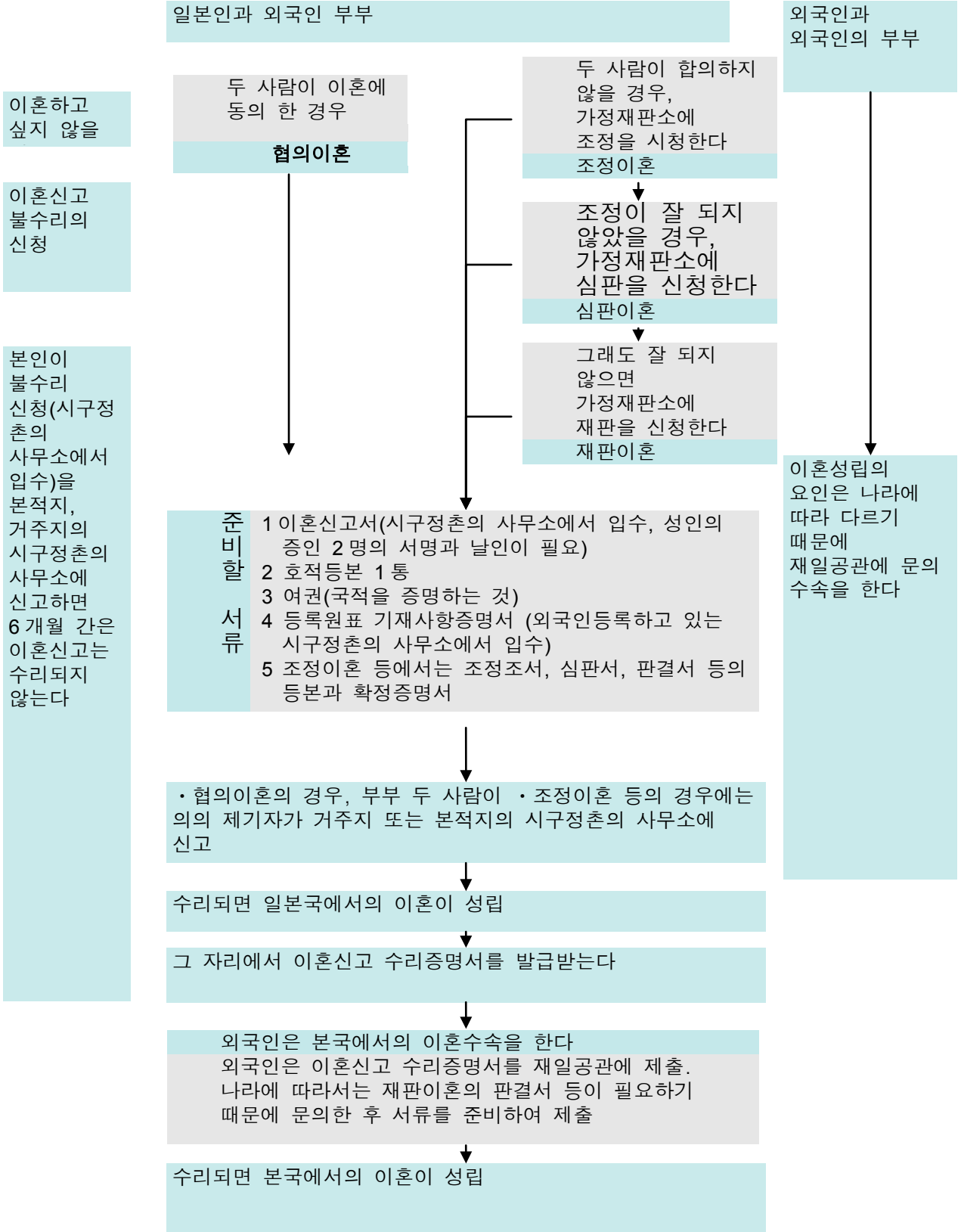




국제결혼 수속의 순서



이혼하고 싶지 않을

이혼신고 불수리의 신청

본인이 불수리 신청(시구청촌의 사무소에서 입수)을 본적지, 거주지의 시구청촌의 사무소에 신고하면 6개월 간은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

일본인과 외국인 부부

외국인과 외국인의 부부

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 한 경우
협의이혼

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, 가정재판소에 조정을 신청한다
조정이혼

조정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, 가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한다
심판이혼

그래도 잘 되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에 재판을 신청한다
재판이혼

- 준비할 서류**
- 1 이혼신고서(시구청촌의 사무소에서 입수, 성인의 증인 2 명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)
 - 2 호적등본 1 통
 - 3 여권(국적을 증명하는 것)
 - 4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 (외국인등록하고 있는 시구청촌의 사무소에서 입수)
 - 5 조정이혼 등에서는 조정조서, 심판서, 판결서 등의 등본과 확정증명서

• 협의이혼의 경우, 부부 두 사람이 의의 제기자가 거주지 또는 본적지의 시구청촌의 사무소에 신고

• 조정이혼 등의 경우에는 시구청촌의 사무소에 신고

수리되면 일본국에서의 이혼이 성립

그 자리에서 이혼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받는다

외국인은 본국에서의 이혼수속을 한다
외국인은 이혼신고 수리증명서를 재일공관에 제출. 나라에 따라서는 재판이혼의 판결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

수리되면 본국에서의 이혼이 성립

이혼성립의 요인은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일공관에 문의 수속을 한다